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34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장철민·김한규·허성무

민병덕 · 임오경 · 황명선

한병도 • 이수진 • 윤종군

김종민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2024년 총선을 기준으로 유권자는 4,425만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함.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

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총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6억 원에 불과해 현행제도는 정치기부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커짐. 정치기부금을 풀뿌리민주주의의 참여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줌. 이는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 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4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정치후원권

- 제24조의2(정치후원권 발행·지급) ① 국가는 국민이 이 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정치후원권"이라한다)를 발행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5매씩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연도부터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권의 발행·지급·사용, 그 밖에 정치후원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 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의4(정치후원권의 사용 및 제한) ① 정치후원권은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정치후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권을 후원금 및 기탁금의용도 이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를 "증여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 감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의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장의2 정치후원권
<u><신 설></u>	제24조의2(정치후원권 발행・지
	급) ① 국가는 국민이 이 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
	(이하 "정치후원권"이라 한다)
	를 발행하여 매년 1월 31일까
	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5매
	씩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에게는 그 다음 연도부터 정치
	후원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후원권의 발행·지급·사용, 그
	밖에 정치후원권 운영에 필요
	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u>한다.</u>
<u><신 설></u>	제24조의3(정치후원권의 유효기
	간) 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은

<신 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생략)

<신 설>

제59조(조세의 감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

<u>발행일부터</u> <u>발행일이 속한 연</u> 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의4(정치후원권의 사용 및 제한) ① 정치후원권은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정치후원권은 다른 사람에 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권을 후원금 및 기탁
 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후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한 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조세의	감면)	1			
			증여	세-	를
<u>면제한다</u>					

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 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 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 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 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 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 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 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 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